#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 **409** 

제출연월일 : 2008. 10. 27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# 1. 제정이유

「교통안전법」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함(안 제2조).

나.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
다.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(안 제6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교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• 폐지 등 없음

(2) 입법예고 : 2008. 9. 5. ~ 9. 24. / 접수의견 없음

##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①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 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.
  - ②기획관리실장, 교통건설국장, 소방본부장, 대전지방경찰청차장, 대전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,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,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·충청남도 지부장, 교통안전공단대전충남지사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위원은 교통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.
- 제3조(위원장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직무를 총괄한다.
- 제4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다.
- 제5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고,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- 제6조(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·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 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된다.

④대중교통과장, 운송주차과장, 건설도로과장, 방재과장, 소방본부대응구조과장,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업무부서장,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업무부서장, 대전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업무부서장,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·충청남도지부 안전관리업무부서장, 교통안전공단대전충남지사안전관리업무부서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, 위촉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.

⑤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 제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교통 안전대책위원회 및 교통안전대책반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로 본다.

# 관계법령

### □ 교통안전법

- 제13조(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시·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도 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 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시·도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교통안 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  - ③ 시·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(이하 "지역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교통안전법 시행령

제3조(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~② (생략)

-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부위원장(이하 이 조에서 "부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전문위원)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수 있다.
  - ② 전문위원은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- 제8조(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.
  - ② 시·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(이하 "지역교 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
- 제9조 (수당 등) 국가교통안전위원회·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